

# 업무 협약 계약서

- 내용 : 대물 및 적재물 손해사정 계약
  - [붙임 2] :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
  - [붙임 3] : 개인정보 보안 처리 약정서

2021. 4. 1.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리카온화재해상자  
동차 손해사정(주)

## [붙임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리카온손해사정(주)(이하 “손해사정업체”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공제사고에 대한 대물 및 적재물 손해사정 업무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업체는 다음과 같이 대물 및 적재물(특수차량, 건축물, 농작물, 기계류 등 피해물을 통칭 이하 ‘피해물’이라 한다)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데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은 2021.04.01.일부터 2022.03.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 ② 계약기간 내에 ‘공제조합’이 의뢰한 업무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완료되지 못했을 때는 ‘손해사정업체’는 동 업무의 완료 시까지 조속히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 【업무의 위임】

- ① ‘공제조합’은 그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손해사정업체’에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 ② 피해물에 대한 손해액 사정 업무 및 공제금 사정 업무로서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 손해액 및 공제금 사정
  - 3) 기타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
- ③ ‘손해사정업체’는 ‘공제조합’의 승낙 없이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금을 합의할 수 없다.

### 제4조 【업무의 수입】

## [붙임 1]



‘손해사정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업무의 위임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관련자 등과 협조하여 수임된 업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 【손해사정 업무 진행 상황 중간보고】

‘손해사정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수임받은 업무 중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물건에 대하여는 손해조사 후 손해 품목, 수량 등 주요 조사내용을 자체 조사 양식 의거 의뢰 후 3일 이내에 서면, 유선 또는 전자파일 형태(전자우편 또는 자체 웹사이트 형태)로 ‘공제조합’에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 제6조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

① ‘손해사정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액 사정 업무 의뢰가 있을 때는 보험업 법 제188조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하고 업무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사정 보고서를 ‘공제조합’에 제출 하여야 한다.

-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 손해액 및 공제금 사정 
- 3) 기타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

② ‘손해사정업체’는 전항의 손해사정 보고서에 조사한 각 조사인과 손해사정사 및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 【수수료】

① ‘공제조합’은 ‘손해사정업체’가 수임 업무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붙임 2]에 의거 수수료를 10일 이내 지급한다.

② 위 ①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료에 더하여 지급한다.

③ ‘손해사정업체’가 사정한 손해사정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시 수수료 지급 을 보류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 지연 사유 포함)

④ ‘손해사정업체’가 사정한 손해사정 금액에 2회 이상 담당자와 이견이 발생할 시

## [붙임 1]



수수료 지급 및 추후 손해사정업무 위임을 보류할 수 있다.

- ⑤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은 업무량, 업무 내용 또는 범위에 따라 상호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 【기밀의 유지】

- ①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업체’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기술상 비밀은 물론 고객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사자 간 서면상의 승인 없이 손해사정서 등 ‘손해사정업체’의 지적 재산 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당해 사건과 상관없는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③ 본 계약 중 위 1항, 2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
- ④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고객 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손해사정업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공제조합’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⑥ 위 1항, 2항, 3항, 4항 및 5항은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 제9조 【관련 법규 및 거래 질서 준수, 협조】

- ①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한다.
- ② ‘손해사정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공제조합’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제공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공제조합’은 위탁업무 수행과정과 협약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손해사정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상의 지원에 협조한다.
- ④ ‘손해사정업체’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민원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⑤ 위탁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붙임 1]

### 제10조 【위임업무 양도 금지】

‘손해사정업체’는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손해사정업체’가 이 계약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손해사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손해사정업체’가 그 업을 중지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4. ‘공제조합’의 판단으로 ‘손해사정업체’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5. ‘손해사정업체’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당한 때
6.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으로 압류집행 또는 경매신청을 당한 때
7. ‘공제조합’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분쟁, 분규, 시위(1인시위 포함)의 발생, 소송 제기 및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9. ‘손해사정업체’가 ‘공제조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잔존물을 처분함으로써 ‘공제조합’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10. ‘손해사정업체’가 업무상 손해사정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간 3회 이상 민원(진흥원) 및 분쟁조정이 접수된 때(다음 해인 1년간 계약이 해지됨)
11. ‘손해사정업체’가 허위(과다) 청구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때

②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2조 【손해배상】

## [붙임 1]

- ①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업체’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해태 하거나,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손해사정업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5백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국내 보증보험 협회사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의 해소】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해석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본 계약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할 법원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업체’는 위 계약 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21년 11월 1일

[붙임 1]



"갑"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이 사 장 서 훈 택



"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 806, 807호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대 표 유 상 현



##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과 제휴사는 계약에 따라 손해사정 수수료를 정한다.

단, 상호 협정 및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 경우 본 기준표를 준용한다.

### ■ 목적

보험업 감독규정 제9-17조(보수)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사정 보수조항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삭제<2014. 12. 31.>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보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손해사정사들마다 각자 달리 적용하고 있어 시장 질서가 문란해져 있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9-17조(보수) <삭제 2014.12.31.>** ①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 기준에 의한다.

### ■ 적용 단위



이 기준은 1 보험사고 1 피해물을 손해사정 단위로 한다.

### ■ 재물 손해사정사 기본보수

특수피해물 및 건설기계, 중장비, 특수용도 차량 포함  
(승합, 일반화물, 승용, 이륜차 제외)

종목	손해사정 금액	요율(%)	기준액(원)
특수 피해물 손해사정 (차량 제외)	5백만원 미만		손해사정 삭감액의 25% (무과실기준, 최고한도 55만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손해사정 삭감액의 25% (무과실기준, 최고한도 55만원)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555,000 ~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012,000 ~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254,000 ~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1,870,000 ~ 2,88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2,880,000 ~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4,400,000 ~ 5,85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5,850,000 ~ 8,0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8,050,000 ~ 별도협의	



## [붙임 2]

※ 권역 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일비, 숙박비 별도 지급

### ■ 보수의 기준

1.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 금액'이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으로, 손해사정사가 정한 사정 금액(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상기 보수는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과실상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수행 시에도 위 재물손해사정사 기본보수에 의거 하여 지급한다. (1.5배 지급 불인)
3. 착수금은 예상 보수액의 1/3 또는 특약에 의한 약정금액으로 하고, 계약 시점에 지급 받기로 하며,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하지 않을 때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각 담보 목적물(이해관계자)별 사정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각 목적물(이해관계자)별 사정 금액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며, 의뢰인이 가지급금(선급금)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 약정에 따라 산정된 중간보수를 지급 받기로 한다.
5. 업무 진행 시 위 보수 외 특별비용(구조 안전진단 비용, 기타 감정 비용 등)은 반드시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위에 따라 정한 보수 외에 부가적으로 여비·교통비 등 실비 발생 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여비·교통비 등을 산정할 때는 '손해사정사 일비 및 출장비'에 의한다.
7. 기타 위장사고 적발 및 법률심의 면책건 등 손해액 절감 시  
☞ '손해사정 금액' 기준액 20%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피해자(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구 분	할 증 율
10인 ~ 30인 미만	손해사정수수료의 1.1배
30인 ~ 200인 미만	손해사정수수료의 1.3배
200인 이상	손해사정수수료의 1.5배

8.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한다.  
(손해조사가 종료된 건으로 공제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만 위탁한 경우)

[붙임 2]

■ 차량 손해사정사 기본보수

종 목	손해사정 금액	최저액	기준액(원)
차량	5백만원 까지	200,000원	손해사정 삭감액의 25% (무과실기준, 최고한도 55만원)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까지	300,000원	
	1천만원 초과	재물 손해사정사 기본보수표 적용	
이륜차	1천만원 이하	400,000원	
	2천만원 이하	500,000원	
	3천만원 이하	600,000원	
	3천만원 초과	800,000원 또는 상호 협의	

※ 권역 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일비, 숙박비 별도 지급

■ 손해사정사 일비 및 출장비

‘일비·출장비’라 함은 업무 위탁자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소용되는 시간(조사·확인 출장 시간, 각종 관련 자료 수집 시간, 손해사정서 작성 시간 등)에 대한 시간급을 말하며,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

구 분	지급기준
항공임	실비 (왕복 기준)
철도임	KTX(고속전철) 실비 (왕복 기준)
선임	1등 정액 (왕복 기준)
대중교통 및 기타 교통수단	실비 (왕복 기준)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실비
일비(식비 포함)	30,000원
숙박비 (1일 당)	50,000원 (출장 편도 200km 이상 시)

1. 대한민국 내 선임손해사정사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하였으면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여비·교통비 : Naver 기준 (유류대는 통상의 거리 × 통상의 리터당 기름값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실비를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안 처리 약정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리카온손해사정(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업무상 제공, 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업무상 제공하여 활용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대책과 책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공정보의 내용】

“위탁자”가 “수탁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위탁자”의 고객정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의 식별정보
2. 고객의 보험계약을 알 수 있는 전산화면 자료
3. 기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제3조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전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고객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하며, 본 계약(업무 협약 계약서) 제8조 상 위약벌의 책임도 부담한다.
3.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 [붙임 3]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 가공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활용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1.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전용 ID 부여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한다.
2. “수탁자”는 “이용자”가 고객 신용정보에 접근할 때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고객 신용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해 기록을 관리한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 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각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의 공유, 누설을 금지하며, “수탁자”는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 제5조 【신용정보의 송수신】

1.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고객정보를 전산 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수신하는 경우 전용선을 이용, 송·수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VPN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PC통신, M/T(Magnetic Tape), 디스켓 등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대상 문서 전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당해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 제6조 【고객정보 폐기 및 반납】

1.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해 사용 또는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고객을 대신해 “위탁자”가 신용정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붙임 3]

3. 위와 같이 “수탁자”가 신용정보를 폐기 한 경우 위탁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 폐기 및 활용중단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책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제8조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간 고객정보의 제공 또는 활용과 관련한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 약정도 유효한 것을 한다.
2. 이 약정은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9조 【교육】

“수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용정보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2021년 01월 일

"위탁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이 사 장 서 훈 택



"수탁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 806,807호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대 표 유 상 현

